

# 租稅制度 및 租稅行政의 中·長期 發展方向

1996. 5. 9

稅 制 班

## 공청회 개요

- 주 제 :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
- 일 시 : 1996년 5월 9일(목) 10:00~12:2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 진행순서
  - 10:00~10:10 개회인사(최 광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0:10~10:40 주제발표
  - 10:40~12:00 토 론
  - 12:00~12:2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사 회 자 : 차병권 (서울대 명예교수)
- 발 표 자 : 안중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 토 론 자 : 배병휴 (매일경제신문사 전무이사)
  -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이사)
  - 이계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석희 (국세청 직세국장)
  - 이수영 (내무부 지방세제국장)
  - 이우택 (한양대 교수, 한국조세학회회장)
  - 이종성 (재정경제원 세제총괄심의관)
  - 정재철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재정학회회장)
  - 조한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가나다順)

# 序 言

本 公聽會 資料는 1995년 7월에 구성된 「新경제 長期構想」 稅制班 作業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稅制 및 稅政의 中·長期 發展 方向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本 資料는 韓國租稅研究院을 중심으로 財政經濟院, 內務部 地方稅制局, 學界 및 관련 專門家들로 구성된 實務作業班의 협의하에 작성되었다.

本 資料는 우리나라 稅制 및 稅政의 現況, 앞으로 예상되는 租稅環境의 변화, 21세기의 비전과 發展戰略, 그리고 우리나라 稅制改編의 基本方向에 대하여 간략히 논하고 있으며, 附錄에서는 各 稅目 및 主題別로 구체적인 短期(1996~2000년)改編方向 및 長期(2000~2020년)改編方向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本 公聽會에서 제기된 各계 各층의 의견은 종합정리되어 「新경제 長期構想」 稅制班의 最終報告書에 반영될 예정이다. 本 資料를 작성하는 데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韓國租稅研究院의 研究委員들 그리고 두번에 걸친 非公開 政策討論會에서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學界, 業界를 포함한 專門家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稅制作業班

## 「新경제 長期構想」 稅制班

	소 속	직 위	성 명
반 장	재정경제원 한국조세연구원	세계총괄심의관 부원장	이종성 유일호
간 사	재정경제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정책과장 연구조정부장	한정기 안종범
반 원			
<정부부처>	재정경제원 내무부	재산세제과장 지방세제과장	김영용 권강웅
<출연연구기관>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지방세제실장	김진수 노영훈 박정수 배준호 성명재 안종석 정영현 이영희
<학계>	서울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 수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과 교수 세무학과 교수	원윤희 윤건영 이성욱 전주성 최명근
<민간전문가>	세동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하나경제연구소	이사 상무이사 연구위원	김연호 윤종규 이인실

# 目 次

I. 稅制와 稅政의 現況 .....	1
1. 租稅體系 .....	1
2. 稅負擔과 稅入構造 .....	4
3. 租稅政策 .....	6
4. 稅務行政 .....	6
II. 租稅環境의 變化 .....	8
1. 地方化 .....	8
2. 國際化 .....	9
3. 情報化 .....	10
4. 老齡化 .....	11
5. 生活環境의 改善 및 삶의 質 向上 .....	11
III. 21세기의 비전과 發展戰略 .....	13
1. 財政政策과 租稅政策의 役割提高 .....	13
가. 租稅政策의 基本戰略 .....	14
나. 租稅政策의 實效性 確保를 위한 發展戰略 .....	14
2. 租稅負擔率과 租稅體系의 展望 .....	16
가. 租稅負擔率 .....	16
나. 租稅體系 .....	17
3. 健全한 納稅風土의 定着과 納稅者權益 增進 .....	19

IV. 稅制改革의 基本方向 .....	20
1. 稅制與件의 整備를 위한 改革方向 .....	20
가. 稅制의 簡素化와 合理化를 위한 租稅體系 改編 .....	20
나. 租稅體系의 先進化 .....	23
다. 租稅減免制度의 合理化 .....	29
라. 根據課稅의 確立과 納稅서비스 強化 .....	31
마. 一貫性있고 合理的인 租稅政策의 推進 .....	35
2. 環境變化에 對處하기 위한 改革方向 .....	36
가. 地方化 .....	36
나. 國際化 .....	40
다. 情報化 .....	45
라. 老齡化 .....	47
마. 生活環境의 改善 및 삶의 質 向上 .....	49

#### 附錄: 稅目別 改善方案

1. 所得稅制의 發展方向 .....	57
2. 世界化時代に 副應하는 企業課稅制度의 確立 .....	61
3. 個別消費稅制의 合理化 .....	64
4. 關稅制度의 先進化 .....	67
5. 相續稅制의 合理化 .....	70
6. 財産稅制의 發展方向 .....	73
7. 地方化時代의 바람직한 地方稅構造 .....	77
8. 根據課稅制度의 確立 .....	82
9. 納稅者 權益保護 .....	85

## I. 稅制와 稅政의 現況

- 現行 租稅制度 및 稅務行政은 1960년대 초부터 계속 되어 온 정부주도하의 高速經濟成長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음.
- 租稅行政은 納稅者를 위한 봉사와 지원보다는 經濟開發과 이를 뒷받침하는 財源確保에 치중하여 納稅者에 대한 서비스 개선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였음.
- 또한 국민의 納稅意識이 낮고 稅制 및 稅政이 기능할 수 있는 隣接制度의 미비로 효과적인 租稅政策의 수행이 저해되어 왔음.
- 21세기의 세계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의 상황은 租稅政策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 租稅制度, 租稅行政, 隣接制度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1. 租稅體系

- 우리나라 租稅體系는 크게 國稅와 地方稅로 나눌 수 있는 바 國稅는 16개의 稅目으로 구성되어 있고 地方稅는 15개의 稅目으로 구성되어 있음.

- 稅目數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고, 稅收寄與度가 낮거나 重複되는 稅目이 많음.
- 또한 教育稅, 農漁村特別稅, 所得割 住民稅와 같은 附加稅 (surtax)가 많아 조세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듦.
- 조세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目的稅가 매우 많다는 점임.
- 國稅의 경우 목적세는 教育稅, 交通稅, 農漁村特別稅의 세 가지가 있으며 地方稅의 경우에는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 事業所稅, 地域開發稅의 4가지가 있음.
- 우리나라의 目的稅는 國稅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특정 部門의 歲出에 直結된다는 目的稅의 外형을 갖추기는 했지만 목적세 존립의 기본 논거인 受益者負擔原則이 지켜지고 있지 못하며 부담과 편익의 균형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예산편성과정에서의 資源配分을 둘러싼 마찰을 줄이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위해 稅金을 거둔다는 명분을 이용하여 租稅抵抗을 줄이는 장치로서 目的稅가 기능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目的稅 고유의 존재의미와는 상당히 괴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그리고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 사이의 세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행 地方稅制는 地方自治團體의 지역적 특징을 살리기 어려운 획일적인 제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조세의 범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租稅體系가 불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음.
- 租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빠져 있고 租稅가 아닌 것이 조세에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 예를 들면 物價上昇, 買占賣惜 등에 대비한 정책수단으로서 도입된 不當利得稅가 그동안 實效性이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租稅體系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開發利益還收와 宅地所有上限制의 경우 開發負擔金과 宅地超過所有負擔金은 분명히 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에 포함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廣告手數料는 소비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조세성격인 開發負擔金, 宅地超過所有負擔金, 廣告手數料 등이 조세로서 징수되지 않고 特別會計의 재원과 公益事業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效率的인 財政運營을 저해할 수 있음.

## 2. 稅負擔과 稅入構造

- 우리나라의 租稅負擔率은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地方稅 負擔率의 증가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음.

<表 1> 租稅負擔率의 變化 推移

(單位: %)

	國稅	地方稅	總租稅
1955	5.8	0.9	6.6
1960	11.2	0.9	12.1
1965	7.2	1.4	8.6
1970	13.1	1.2	14.3
1975	13.7	1.6	15.3
1980	15.8	2.1	17.9
1985	15.0	2.1	17.1
1990	15.0	3.6	18.6
1991	14.2	3.7	17.9
1992	14.7	4.0	18.7
1993	14.8	4.1	18.9
1994	15.6	4.3	19.9
1995	16.3	4.4	20.7

주: 1995년은 잠정치임.

- 1995년의 租稅負擔率은 20.7%에 이르렀으며 정부의 新경제 5個年計劃에 의하면 1997년까지 租稅負擔率이 22%~23%까지 증가될 전망이어서 租稅負擔率의 증가추세는 당

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정부수입 중 地方稅收入의 비중은 지난 20년 사이에 두배 이상으로 급속하게 늘어 났는데 이는 專賣納付金の 地方稅轉換, 土地過多保有稅의 廢止와 綜合土地稅의 導入, 土地價格 上昇, 不動產 課稅標準의 現實化率 引上 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3. 租稅政策

- 우리의 租稅政策은 그동안 빈번한 稅制改編을 단행함으로써 稅制改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관성 있는 租稅政策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주체로 하여금 未來에 대한 不確實性뿐만 아니라 政策에 대한 不確實性을 심어 주어 合理的 經濟活動을 하는 데 장애가 되었음.
- 우리의 租稅政策은 표면적으로는 所得 및 富의 再分配와 租稅負擔의 衡平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個人所得, 相續·贈與, 不動產의 保有 등에 累進課稅하며 사치성 소비에 特別消費稅를 부과하는 등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은 많으나) 實質的인 再分配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시됨.
- 租稅政策의 政策形成過程에서 여론수렴 절차가 미진하여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거나 비합리적인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 4. 稅務行政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우선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정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稅制와 稅

政은 주로 課稅者인 徵稅當局의 입장에서 운영되어 왔음.

- 그 결과 租稅負擔의 公平性은 희생되고 徵稅의 效率性이 중요시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침해되어 왔음.
- 납세자의 권익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는 稅務調査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음.
- 稅務調査는 租稅의 賦課·徵收와 관련하여 租稅法律主義 원칙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租稅의 賦課·徵收 이외에 다른 사회경제적 현안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빈번히 활용되어 왔음.
- 이와 더불어 납세자의 納稅誠實度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
- 그동안 높은 세율체계하에서 個人事業者를 중심으로 課標 漏落이 보편화되었음.
- 이러한 사업소득의 課標陽性化가 미진하여 결국 소득종류별, 특히 勤勞所得과 事業所得間의 세부담 불공평성의 문제를 야기하였음.
- 나아가서 현행 稅務行政의 여건으로 課標陽性化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됨.

## II. 租稅環境의 變化

- 21세기를 맞이까지 國內의 經濟여건은 激變과 가 될 것으로 豫상됨.
  - 經濟構造의 變化, 人口構造의 變化, 國民意識을 초월한 無限競爭時代의 도래, 技術의 급 따라 야기될 社會 및 經濟의 構造的 轉換은 이에 대한 力動的 政策對應을 필요로 함.
- 21세기 租稅環境에 영향을 미칠 주된 變化要因으로 地方化, 國際化, 情報化, 老齡化, 生活環境의 高度化 등이 고려 될 수 있음.

### 1. 地方化

- 地方自治制의 실시로 地方政府의 財政支出需要가 증대되어 中央과 地方間의 財源配分 문제가 부각되고 이로 인해 國稅와 地方稅間의 울타리 조정, 地方稅의 新設, 自治財政權 논리를 基반으로 지방정부에의 稅源移讓 요구 증대 등 근본적인 問題가 논의될 전망임.
  - 稅源配分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내의 배분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지방의 창의성, 책임성의 확보와 지역간 균형발전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適正 稅源配分體系의 확립이 요구됨.

## 2. 國際化

- 우리나라는 小規模 開放經濟로서 국경없는 無限競爭時代에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制度와 意識의 일대 전환이 필요함.
- 노하우, 브랜드 등 정보기술서비스의 輸出入과 자본의 流出入이 늘고 海外投資, 海外生産이 일반화되면 국가간 租稅競爭(Tax Competition)이 심화되고 이를 피하기 위한 國家間 租稅調和(Tax Harmonization)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資本移動이 활발한 사회에 적합한 조세정책을 펼쳐야 하는바, 먼저 貯蓄에 대한 租稅政策과 投資에 대한 租稅政策의 조화가 필요하고, 投資의 租稅彈力性を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함.
- 또한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단기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는 租稅政策이 필요함.
-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계기로 租稅制度를 國際規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國際交易秩序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國際化와 開放化를 요구하고 있으며, 國際化와 開放化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의 철폐를 수반하고 국제간 關稅協力 강화를 요구함.
- 따라서 國內産業의 保護와 育成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입장만을 고려한 독자적인 關稅政策을 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음.

### 3. 情報化

- 人力不足이 진행되는 가운데 情報通信技術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既存 認識에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稅務行政도 이에 대응해 電算化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 濫存하고 있는 지하경제와 불투명한 납·징세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情報化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地下經濟를 축소하고 행정을 간소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附加價値稅 및 事業所得 課稅 등 과세포착률이 높지 못한 세목에 記帳의 電子化를 도입해 납·징세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세수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 4. 老齡化

- 2020년에는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世代가 隱退 期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老齡社會로 移行해 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社會복지 수요가 증대할 것임.
- 무엇보다도 公的年金財政의 고갈로 福祉財政 支出需要에 充당할 財源확보가 艱難한 課題로 대두될 것이고
- 財源확보와 관련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社會保障稅의 도입문제나
- 주된 세원을 所得稅에서 구할 것이나 消費稅에서 구할 것이나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世代間의 利害調整이 큰 課題로 大두될 전망임.

#### 5. 生活環境의 改善 및 삶의 質 向上

- 國民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生活環境의 改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要求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임.
-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成長과 福祉의 二分法的 思考方式에서 탈피하여 國家의 장기적 均衡발전을 위한 成長과 福祉의 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구됨.

- 이러한 패러다임하에서는 人間中心의 개발전략을 통한 삶의 質 향상이 핵심과제가 됨.
- 生活環境을 保護하고 改善하여 삶의 質을 향상하기 위해 環境稅나 環境관련 負擔金의 도입과 活用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
- 특히 도시의 大氣汚染, 水質汚染, 騒音問題가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이들의 發生源인 自動車와 油類, 그리고 공장 폐수, 생활폐수의 방출처에 대한 課稅強化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民間福祉支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 技術, 敎育, 訓練에 대한 지원도 증가되어야 할 것임.

### Ⅲ. 21世紀의 비전과 發展戰略

#### 1. 財政政策과 租稅政策의 役割提高

- 그동안 정부의 經濟政策은 財政·金融政策으로 대표되어 왔으나 金融政策은 開放化와 각종 規制緩和를 통해 그 실효성이 약화되어 앞으로는 巨視經濟運用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어 졌음.
- 상대적으로 財政政策이 巨視經濟運用을 위한 유력한 정책 수단으로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財政政策의 한 축인 租稅政策은 정부의 政策手段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租稅政策은 각 經濟主體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合理的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資源配分의 歪曲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모색하는 데 기여함.
  - 租稅政策에서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稅率調整으로 稅率變化는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經濟主體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經濟部門間 資源配分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가. 租稅政策의 基本戰略

- 일부 租稅에서는 納稅者와 擔稅者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租稅轉嫁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租稅政策의 결정에 관여하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效率性, 衡平性, 稅收確保의 3대 기능에 충실한 租稅政策을 펴나가야 할 것임.
- 租稅政策은 經濟主體의 경제활동에 최대한 誘引效果 (incentive effect)를 창출하도록 운영되어야 함.
  - 勞動者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企業家에게는 건설적인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며 아울러 消費者에게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영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나. 租稅政策의 實效性 確保를 위한 發展戰略

- 稅率調整을 중심으로 하는 租稅政策이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基本的인 諸般與件이 개선되어야 함.
- 첫째, 각종 租稅減免 등으로 稅源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稅率變化의 유인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각종 稅制上 誘引을 선별적인 租稅減免을 통해 제공하여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稅率變化의

효과는 상당히 미진하였음.

- 그러나 WTO 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租稅支援의 사용이 제약을 받게 되므로 選別的 租稅支援에서 稅率調整을 통한 包括的 租稅誘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가 되었음.
- 둘째, 租稅制度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租稅行政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租稅政策의 효과는 미진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는 租稅制度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納稅協力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오히려 이와 같은 낮은 納稅協力 수준을 감안하여 제도 자체를 조정할 정도로 租稅行政의 여건이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우리의 낮은 納稅協力 수준에 대한 歷史的·經濟的 분석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稅制와 稅政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셋째, 租稅政策의 一貫性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주체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함.
- 지금까지 우리의 租稅政策은 빈번한 稅制改革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앞으로는 보다 長期的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신중한 稅制改編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함.

## 2. 租稅負擔率과 租稅體系의 展望

### 가. 租稅負擔率

- 稅制環境의 變化에 대비하고 증대하는 社會간접자본의 수요와 社會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금보다 租稅負擔率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특별한 稅制改編이 없다고 가정하고 단순히 과거의 추이를 이용하여 稅收規模를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租稅負擔率은 앞으로 계속 높아져서 2020년에는 약 25%가 될 것으로 전망됨.
- 國稅 稅목별 稅收推計模型을 기초로 예측한 稅목별 稅收 예측치의 총계를 GNP 대비 비율로 산출하여 보면 2020년 의 國稅負擔率은 19.5%, 1970~94년의 地方稅收入을 시간 추세와 國民총생산에 회귀하여 예측하여 보면 2020년의 地方稅負擔率은 5.8%가 될 전망임.
- 이와 같은 租稅負擔率의 추이는 經濟환경 變化에 따른 財政需要의 變化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의 추이에 근거하여 추정된 것으로 대내외 환경變化에 따른 財政需要를 충족시키기에 걱정한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야 할 것임.

<表 2> 租稅負擔率 展望

(單位: %)

	國稅	地方稅	租稅
1996	16.5	4.7	21.2
1998	17.8	4.8	22.6
2000	19.3	5.0	24.3
2010	19.5	5.5	25.0
2020	19.5	5.8	25.3

註: 1) 산출근거

國稅負擔率: 國稅稅目別 稅收推計模型을 기초로 예측한 세목별 세수예측치의 총계를 GNP 대비 비율로 산출.

地方稅負擔率: 1970~94년의 地方稅收入을 시간추세와 국민총생산에 회귀하여 예측. 단, 地方自治時代에서의 國稅와 地方稅 조정문제는 반영되지 않음.

2) 위의 추정치는 현행 租稅體系下에서 租稅負擔率 추세선을 기초로 추정한 것이므로 장래에 稅法改正이나 租稅構造改編 등을 포함한 제반여건이 변화할 경우 예측치가 달라질 수도 있음.

- 또한, 租稅負擔率의 증대는 여러 租稅政策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租稅制度와 租稅行政을 어떻게 운용하여 租稅負擔率을 결과적으로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 나. 租稅體系

- 租稅體系를 所得課稅, 消費課稅, 財產課稅로 구분할 경우 앞으로는 所得課稅의 비중이 커지고 消費課稅의 비중이 작아질 전망이다.

- 이는 金融所得綜合課稅의 실시와 事業所得者의 課稅陽性化를 통해 所得課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2000년까지는 증가속도가 완만하다가
- 金融所得綜合課稅가 정착되고 國稅통합전산망 구축에 의해 稅務行政의 科學化가 본격화되고 包括的 所得稅制가 導入·定着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特別消費稅 등의 비중 축소 등으로 消費課稅의 비중이 약화되면 2020년 경에는 所得課稅의 비중이 消費課稅의 비중보다 커질 전망이다.
- 財産課稅는 그 동안 財産移轉課稅의 비중이 財産保有課稅보다 월등히 컸으나 財産稅 課稅現實化 등을 통해 財産保有稅 중심체계로 발전할 전망이다.

### 3. 健全한 納稅風土의 定着과 納稅者權益 增進

- 우리 국민은 불행히도 朝鮮末期와 日帝 植民支配期の 收奪을 체험하면서 納稅義務를 기피하는 풍토가 조성되었고 이러한 歷史的 상황으로 인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納稅意識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음.
- 앞으로 納稅者의 主權이 향상되고 나아가 納稅者의 權益이 크게 보호되는 사회가 되면 納稅意識도 달라질 것임.
- 租稅의 衡平性이 높아져 納稅意識이 개선될 것임.
- 事業所得者에 비해 勤勞所得者의 세부담이 높은 것은 事業所得의 課稅捕捉率이 낮기 때문이며,
- 따라서 所得種類別 稅負擔의 不公平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事業所得의 課稅陽性化가 시급함.
- 應能負擔原則과 受惠者負擔原則의 준수를 통해 水平的 衡平性을 제고시키면 納稅者의 도덕심이 크게 높아질 것임.
- 국민 모두가 떳떳하게 納稅義務를 다할 때 脫稅者가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것임.
- 아울러 納稅者의 權益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필요하게 脫稅者로 의심하거나 부당하게 稅務調査를 받는 사례가 최소화될 것임.

## IV. 稅制改革의 基本方向

### 1. 稅制與件의 整備를 위한 改革方向

- 바람직한 租稅制度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衡平性, 明瞭性, 效率性, 納稅·徵稅의 經濟性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에는 아직 우리의 稅制와 稅政의 與件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2000년까지는 기존의 未備된 稅制與件을 정비하기 위한 稅制改革의 基本方向을 설정하고 그후 성숙된 여건하에서 변화해가는 環境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改革을 추진하되 2020년까지 추진할 改革課題를 長·短期課題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가. 稅制의 簡素化와 合理化를 위한 租稅體系 改編

- 稅制는 納稅者가 納稅하기에 편리하고 徵稅當局이 값싼 비용으로 徵收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現實의 稅制는 복잡한 減免制度, 다양한 課稅對象, 비현실적인 資產評價, 난해한 課稅標準과 稅額算出方法 등으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 이로 인해 적당히 記錄하여 申告하거나 政府賦課決定을 기다리는 納稅慣行이 일반화됨.
- 현행 諸目的稅의 기능을 점검하여 일부 稅目은 一般稅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지출에 따른 便益의 크기와 受惠對象者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때 受益者負擔 原則에 의거한 目的稅는 공공서비스를 適正수준에서 공급,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줌.
- 長期計劃에 의거해 현재 31개인 稅目(國稅 16, 地方稅 15)을 段階的으로 통폐합하여 簡素化하는 것이 바람직함.
- 稅收寄與도가 낮고 徵稅費用이 過多한 稅目を 폐지하거나 다른 세목에 통합하여야 함.
- 동일 課稅對象에 부과되는 다양한 稅目들을 한가지로 통합함으로써 納稅者의 便益이 증진됨.
- 동일 課稅對象에 두번 이상 納付하는 데서 비롯되는 納稅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예: 取得稅와 登錄稅, 綜合土地稅와 財產稅).
- 不當利得稅는 폐지하고 土地超過利得稅는 토지이용에 대한 왜곡과 과도한 徵稅費用의 문제가 있으나 지가급등에

대비한 예비적 장치로서의 기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의 도입과 더불어 長期的으로 廢止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附加價値稅 課稅對象에서 제외되어 別途稅目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불분명한 電話稅(國稅)는 附加價値稅에 통합함. (電話稅가 地方讓與財源임을 감안하여 國稅(또는 내국稅)의 일부분을 讓與金財源으로 확보하거나 교부세재원에 추가하여 地方財政調整財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地方稅 中 稅目的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稅目を 통합함. (登錄稅와 取得稅는 取得稅로, 農地稅는 ‘綜合所得稅’로, 綜合土地稅, 財產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 事業所稅 財產割은 ‘財產保有稅’로 통합. 그리고 屠畜稅는 免許稅로 통합하거나 手數料로 전환.)

- 地方稅의 통폐합은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그리고 地方政府 내에서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間의 세원배분문제를 야기시키는 바, 이는 重複課稅制度의 활용과 地方財政調整制度의 개편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임.

- 目的稅는 各 稅目的 기능과 운용의 實狀을 검토하여 本稅에 통합할 것과 독립된 稅目으로 유지시킬 것을 구분하여야 함.

- 教育稅의 경우 基本的으로 本稅에 통합하되, 部分 中國

稅分 教育稅는 本稅에, 地方稅分 教育稅는 該當 地方稅에 통합함.

- 단 教育財源의 확보를 위해 國세로 통합한 부분만큼 地方 教育財政交付金을 증가시키고 지방세로 통합된 부분만큼 지방자치단체의 教育財政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함.
- 交通稅는 단기적으로는(2000년까지) 경유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稅率水準은 大氣汚染, 道路·橋梁의 破損, 交通混雜 등 外部效果에 의한 社會的 費用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한 뒤 長期的으로는 特別消費稅와 함께 消費稅(國稅)로 통합함.
- UR 타결 이후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한시적으로 마련된 農漁村特別稅는 時限滿了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廣告手數料는 特別消費稅에 포함시키고 開發負擔金, 宅地超過所有負擔金은 國稅와 地方稅의 財產關聯稅制의 정비와 함께 재산관련세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나. 租稅體系의 先進化(所得稅, 財產稅)

- 우리나라의 租稅體系를 先進國과 비교해 보면 所得課稅의 對GDP 비율이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所得稅 機能의 強化가 租稅體系의 先進化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所得稅 기능이 미약한 것은 완전한 包括的 所

得稅制度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稅務行政의 非效率과 納稅意識의 부족으로 稅源捕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예외적인 소득을 규정하기 전에는 모든 소득을 所得稅 과세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包括的 所得稅制度가 이상적인 所得稅制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所得稅法에 열거된 소득만을 綜合課稅 대상으로 규정하는 列舉主義에 입각하고 있음.
- 더구나 열거된 소득 중에서도 讓渡所得, 退職所得, 山林所得은 별도로 課稅되고 있음.
- 1996년부터 利子和 配當所得이 綜合課稅에 포함되지만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초과분만 綜合課稅하고 有價證券 讓渡 差益은 非課稅함으로써 包括的 所得稅制와는 거리가 있음.
- 所得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稅務行政의 效率性을 통한 稅源捕捉 노력과 金融所得綜合課稅의 정착을 통한 包括的 所得稅制로의 이행이 필수적임.
- 財産課稅의 경우에는 對GDP 비율은 先進國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財産課稅의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取得稅나 登錄稅 같은 取得段階課稅가 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財産稅나 綜合土地稅 등과 같은 保有段階課稅에 비해 더 큰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반대로 保有段階課稅의 비중이 더 큼.

## 1) 短期改編方向

### 가) 所得稅

- 所得稅 기능을 강화하고 所得間 稅負擔 衡平性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事業所得 등과 같은 課標陽性化가 미진한 소득에 대한 적극과세로 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租稅制度和 租稅行政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課標陽性化를 위해서는 根據課稅의 確立이 절실히 요청되 는바 이를 위해서는 誠實記帳을 적극 유도하고 稅金計算書 등의 과세자료의 발생을 원활히 하는 制度的·行政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申告納付制度의 정착을 위해 自進申告納付案内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그동안 推計課稅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標準所得率은 비공개하고 표준소득률 이외의 다양한 所得推計方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나) 財産稅

- 課稅主體別(국세·지방세), 機能別(재원확보·정책목표달성)로 구분되어 多岐的·斷片的으로 운영, 개편되고 있는 財産課稅

를 재산의 取得·保有·處分 단계별로 主機能을 재정립하여 이에 따라 稅目を 재편하는 체계적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이 核心課題라고 판단됨.

-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需要 증대와 土地保有稅 부담 증가를 통한 지가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은 현행 土地保有稅인 綜合土地稅制 구조하에서 동시에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個別物稅的 성격의 (土地分)財産稅와 人稅的 성격의 綜合土地稅로 二元化한 후 각각의 목적에 부합되게 발전시켜야 함.
  - 地方自治制度 활성화로 증가된 地方政府 財政需要를 新稅源의 발굴과 地方所得稅·地方消費稅의 도입만으로 충족하는 것보다는, 應益原則에 따라 比例課稅할 수 있는 (토지분)財産稅를 시·군·구세로 신규 도입하여 地方政府의 財政責任性(fiscal accountability)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가안정 및 토지과다보유 억제라는 中央政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人別控除範圍를 갖는 綜合土地稅로 개편하여 免稅點(과세최저한) 이상의 土地過多保有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累進課稅體系로 전환하며, 세수입은 基礎自治團體에 대한 地方讓與金 재원으로 활용함.
- 地方稅 성격의 (土地分)財産稅는 토지·건물분리평가 및 分離課稅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建物分)財産稅와 統合課稅하며, 세율구조는 累進稅率에서 比例稅率로 전환함.

## 2) 長期改編方向

### 가) 所得稅

- 현재의 基準金額인 4000만원은 源泉徵收稅率 15%를 감안하여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源泉徵收稅率이 인하될 경우 基準金額의 인하가 필요하고 인하수준은 재정상황 및 세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基準金額 인하문제는 綜合課稅가 金融市場에 미치는 영향과 納稅協力費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金融所得綜合課稅의 기준금액을 없애고 전면적인 綜合課稅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金融所得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 이를 위해서 有價證券 讓渡差益課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는 所得源泉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稅率體系로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所得稅制를 전면 개편하여야 함.
  - 소득세법상 課稅所得의 개념을 「制限的 列舉主義」에서 「거의 모든 소득을 열거하는 實質的 의미에서의 包括主義」로 변경하고
  - 기타 각종 非課稅·減免所得을 최소화하여야 함.

- 현재 非課稅되고 있는 5년 이상 長期貯蓄性 保險差益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 유지를 위해 有價證券 讓渡差益과 함께 課稅하는 것이 타당함.

## 나) 財産稅

- 公示地價制度는 土地保有稅 과표형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 基本方向을 정하고 去來段階의 과세는 實去來價額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課標評價의 정확성을 제고함.
  - 基準時價를 이용하여 資本利得을 추계한 후 과세하는 讓渡所得稅는 課標率의 取得·賣却 시점간 균일성이 公示地價制度 내부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의 基準時價 적용원칙에서 實去來價額 적용원칙으로 전환함.
- 主居用住宅의 대체취득에 대한 혜택으로 현재 운영중인 1世帶 1住宅 讓渡所得稅 非課稅制度를 조세혜택 부여의 본연의 목적과 정부의 주택공급 기본정책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정상화함.
  -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讓渡稅 非課稅 항목인 1世帶 1住宅 讓渡稅 非課稅制度를 所得控除制度로 전환.
- 不動産稅制 중 取得段階課稅인 登錄·取得稅와 移轉段階課稅인 讓渡所得稅의 課稅評價를 일치시키면서 감면조례시행을 폐지하고 登錄稅率을 하향조정함.
  - 保有稅負擔의 증가 및 課標現實化 진전에 맞추어 取得稅負擔을 점차로 완화시킴.

-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資産市場의 均衡發展 정도에 맞추어, 자산유형별로 분류되어 非課稅 또는 差等課稅되는 資本利得課稅制度를 재정비함.
- 資本利得課稅 범위를 金融資産까지 확대하여 包括的인 資本利得稅를 만든 후, 궁극적으로 所得稅로서의 기능을 반영하여 綜合所得稅 체계내로 흡수함.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정여건 개선으로 과거의 物件(과세대상)위주 재산과세방식에서 人別·家口別(납세의무자) 재산과세인 財産保有稅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不動産이 대표적인 富의 척도로서 부적절해질 가능성이 있는 장래의 경제환경을 염두에 두어, 人別 또는 家口別 재산보유 정도에 따라 所得再分配를 위한 包括的인 財産保有稅를 고려할 수 있음.

#### 다. 租稅減免制度의 合理化

- 租稅減免制度 정비의 방향은 再分配를 위한 減免制度는 축소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減免制度는 支援方法, 支援強度, 支援範圍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 규범과 경제원리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것임.

##### 1) 短期改編方向

- 既存의 減免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新規 減免의 시행도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輸出 및 外貨獲得産業에 대한 지원, 企業財務構造改善을 위한 지원, 國土開發을 위한 지원, 農漁村 經濟活性化를 위한 지원 가운데 실효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많은 감면 항목을 우선적으로 폐지.
- WTO 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禁止補助金은 일정 기한 내에 폐지 또는 정비: 國產優待條項이 있어 수입대체효과를 발생시키는 각종 投資稅額控除制度는 國產優待條項을 폐지함으로써 투자촉진제도로 정비하고 수출가격지지로 인하여 수출촉진 효과를 발생시키는 輸出損失準備金 등 外貨獲得支援制度도 전면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함.
- 또한 減免의 항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日沒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체계의 정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 長期改編方向

- 長期的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租稅支援制度 자체를 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租稅支出豫算制度를 도입하여 租稅支援 전반을 국민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시행하되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철폐하고 設備投資·技術開發 등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中小企業, 農漁村 등 불가피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시행해야 함.

## 라. 根據課稅의 確立과 納稅서비스 強化

-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에 根據課稅制度를 확립시켜 稅制上的 水平的 公平性을 확보해야 함.
- 課稅當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욱 納稅者 위주의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納稅者 스스로도 지금까지의 納稅에 대한 認識을 바꾸어 나가야 함.

### 1) 短期改編方向

- 根據課稅의 確立을 위해선 事業者가 거래기록을 성실하게 記帳하고 稅金計算書를 授受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함.
- 稅金計算書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적·행정적 유인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의 예산 집행시 稅金計算書나 신용카드만 사용하도록 함.
  - 민간부문에서도 신용카드를 통한 대금결제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카드거래 所得稅控除制度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함.

- 무자료거래 특별단속반을 상시 가동하고 상습적인 무자료도매상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료상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정부부과과세제도와 자진신고납부제도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금융실명제의 실시, 전산화·정보화시대, 높은 교육수준 등을 감안할 때 根據資料에 의한 自進申告納付制度의 轉換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記帳에 의한 稅務申告를 義務化하고 각종 신고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불성실신고자들을 적발해 낼 수 있는 稅務調査 強化方案이 보완책으로 마련되어야 함.
- 다수의 국민이 記帳能力이 없기 때문에 記帳에 의한 세금납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나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에 미루어 지속적인 敎育과 弘報를 통해 記帳이 모든 納稅行爲의 근간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과도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나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稅務代理人을 활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 課稅當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욱 納稅者 위주의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納稅者 스스로도 지금까지의 納稅에 대한 認識을 바꾸어 나가야 함.

## 2) 長期改編方向

- 課標陽性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稅金計算書 授受秩序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課稅體系를 單純化하고 根據課稅制度를 확립시켜야 함.
  - 따라서 長期的으로는 少額不徵收를 제외하고는 모두 一般課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매출규모가 매우 작아서 부가가치세제에 적용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少額不徵收 제도를 유지하여 少額不徵收와 一般課稅의 두 가지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漸進的으로 現행의 少額不徵收 範圍를 상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 課稅特例制度를 폐지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一般消費稅로서의 附加價値稅의 과세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少額不徵收制度의 범위는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稅務署組織을 稅目別 組織에서 納稅者 中心의 機能別 組織으로 개편
  - 現행 個人事業者의 경우 事業場 세무서의 附加價値稅課, 住所地 세무서의 所得稅課, 財産稅課 등 세목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납세자별 관리조직으로 개편
  - 이는 業務重複의 防止, 納稅者서비스의 增大,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함.

- 납세서비스 案内業務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 納稅者의 자발적인 納稅順應度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納稅者에 대한 적극적 안내와 함께 미래의 납세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효과적인 방안임.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다양하고 간편한 案内冊子の 배포를 통해 納稅者들과의 거리감을 줄여나가야 함(輿論調査 結果 63%가 이를 지지).
- 日本·美國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租稅教育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納稅順應費를 줄이기 위해서는 租稅制度를 가능한 한 單純化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예측가능성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잘못되지 않은 稅制는 改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嚴正한 稅政執行과 함께 민주세정의 구현을 위해 納稅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서비스위주의 行政이 될 수 있도록 課稅當局과 納稅者가 정보와 법적 지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로 재구성하여야 함.
- 納稅者權利救濟制度(地方稅 포함)의 확충을 위해서는 음부즈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와 같이 納稅者의 자발적인 納稅協力이 부족한 상황 및 徵稅實績에 의한 공무원의 평가 등 기존의 租稅慣行 및 制度 등의 개선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 一貫性있고 合理的인 租稅政策의 推進

- 稅制改編에 따른 效果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每年 稅制改編을 단행함으로써 경제의 不確實性을 加중시키고 경제主體의 의사결정과정에서 混亂을 초래한 측면이 있음.
- 稅制改編의 필요성 제기, 公聽會 등을 통한 각 계층의 意見收斂, 稅制發展審議會 論議, 國會審議, 稅法改正, 事後效果點檢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整合性을 지니도록 해야 함.
- 富 및 所得의 分配와 資源配分은 租稅政策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效率性과 衡平性에 부합되지 않는 租稅政策은 지양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租稅의 과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分析과 理解, 政策形成 過程의 開放性, 지나친 政治적인 이해관계로부터의 獨立性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2. 環境變化에 對處하기 위한 改革方向

### 가. 地方化(地方稅)

-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選出되어 본격적인 地方自治가 시작되었으나 이를 財政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地方財政制度가 不備한 실정임.
  - 地方政府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財政計劃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自律性·責任性을 신장시키는 한편
  - 지역간의 經濟力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地方財政調整制度를 정비하여야 함.
  - 이와 아울러 中央政府 財政과 연계하여 國家競爭力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整合性을 추구해야 함.
- 財産稅를 중심으로 한 세원분리주의분은 地方稅의 自主性을 제고하고, 所得稅를 세원공유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地方稅源의 강화를 뒷받침함.
  - 地方財政의 擴充과 지역간의 衡平性 提高를 위해서 地方交付稅率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며 배분산식을 單純化하고 諸地方財政調整制度間的 연계성을 강화함.
  - 각 自治團體 高유의 稅源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法定外稅目的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課稅自主權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1) 短期改編方向

- 현행 地方稅 전체 수입의 과반 이상을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財産關聯 稅目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충분한 伸張性이 있는 所得과 消費課稅의 비중 제고가 필요함.
- 消費課稅의 대표적인 稅目인 담배소비세는 한미담배양해록에 구속되어 課稅自主權을 침해받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현행 從量稅體系에 從價稅的인 성격을 가미하면 담배소비의 고급화추세에 발맞춰 稅收의 安定性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財産課稅의 경우는 전체적인 비중은 결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니나, 문제는 財産保有課稅에 비하여 去來 및 移轉課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稅收가 부동산경기에 크게 좌우되어 稅收의 安定性이 적다는 점임.
- 따라서 課標의 現實化를 통한 稅負擔의 適正化 및 財産關聯稅의 과세강화와 綜合土地稅의 비례세분과 인별합산분의 분리·이원화 등을 통해 保有課稅의 稅負擔을 대폭 증대시키는 대신 재산의 去來 및 移轉課稅인 取得稅와 登錄稅의 세율을 그에 상응하여 내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綜土稅의 비례분은 현행과 같이 시군세로서 당해 토지가 소재한 市·郡에서 부과·고지·징수하도록 하며, 인별합산분

은 전국합산하고 공제수준을 적절히 설정하여 地方讓與稅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함.

- 현행 定額稅率構造를 취하고 있는 稅目 중에서 從價稅(ad valorem tax)로의 전환 또는 從價稅의 성격을 가미할 필요가 있는 세목으로는 自動車稅, 담배소비세, 事業所稅 財產割을 꼽을 수 있음.
- 획일적인 세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개개 地方自治團體의 특수한 財政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彈力稅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地域開發稅는 법정외 普通稅制度의 도입시까지 지역의 특성에 적절한 稅源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普通稅로 전환시킴.
- 地方稅를 통한 租稅支援의 규모가 과다하며 성격도 地方自治團體間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差別性이 부족함.
  - 지역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地方議會의 결정에 의한 自主的인 租稅減免이 선택적으로 도모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地方稅行政의 效率化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稅務公務員의 專門化, 稅務行政의 電算化와 더불어 稅制의 單純化가 관건임.

## 2) 長期改編方向

- 地方財政의 擴充을 도모하는 방식에는 地方稅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地方財政調整制度의 확충을 통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음.

- 地方稅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법은 美國 및 日本과 유사한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 현실에 있어 富益富 貧益貧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地方稅의 확충과 地方財政調整制度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는 유럽제국의 형태가 우리에게 더 바람직할 수 있음.
- 地方政府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所得稅와 같이 지역집중도가 낮은 國稅에 대해 地方政府가 稅源을 共有하는 重複課稅制度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자동차세의 適正化 및 走行稅·環境稅的인 특성을 감안하여 交通稅의 일부분을 共有하여 도로파손,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등 外部不經濟를 內在化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경우 所得稅 등의 共有方式이나 行政에 대해서는 住民稅制度를 발전시켜 현행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책임성이나 자주성의 원리에 입각하기보다는 行政의 效率性과 經濟性, 그리고 納稅에 있어서의 明確性과 便宜性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를 租稅廳에서 징수하여 해당 自治團體에 交付하도록 함.
- 따라서 地方稅의 구조는 稅源分割分과 共有分으로 二元化되어, 稅源分割主義에 입각한 財產稅 위주의 地方稅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稅率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地方稅行政에 있어서도 稅源分離主義에 입각한 稅政에 대해서는 地方自治團體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電算化·專門化를 꾸준히 추진하고, 重複課稅部分에 대해서는 租稅廳에서 담당하여 徵稅의 效率性을 추구함.
- 세원분리주의에 따른 세정에 있어서도 현행 道稅의 시·군·구 代理徵收 형식에서 탈피하여 廣域政府 단위에 地方稅務局을 설치하고 지역별로 單位稅務署를 설치하여 地方稅行政을 專門化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중복과세의 경우는 납세간편성과 징세효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을 租稅廳으로 개편하여 징세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나. 國際化(企業課稅, 關稅)

- 國際交易秩序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國際化와 開放化를 요구하고 있으며, 國際化와 開放化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의 철폐를 수반함.
- 따라서 國內産業의 保護와 育成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입장만을 고려한 독자적인 關稅政策을 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음.
- 이러한 制約條件下에서 우리나라의 關稅制度를 先進化하기 위해서는 關稅體系의 합리적 개선, 關稅支援制度의 개선, 産業被害救濟制度 운용의 활성화, 國際關稅協力の 강화, 輸入通關制度의 선진화 등과 같은 분야가 核心課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1980년대 이후 世界經濟 環境의 變化 중 중요한 것의 하나로 企業活動의 世界化를 들 수 있음. 과거에는 財貨 및 用役의 국제거래가 국가간 경제교류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資本을 중심으로 한 生産要素의 국가간 교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企業活動의 世界化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企業課稅 문제는 크게 租稅體系의 합리화 및 국제적 조화, 국제적 二重課稅 방지, 국제적 租稅回避 방지의 세 가지로 구분됨.

## 1) 短期改編方向

### 가) 企業課稅

- WTO 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禁止補助金은 일정 기한 내에 폐지 또는 정비: 國產優待條項이 있어 수입대체효과를 발생시키는 각종 投資稅額控除制度는 國產優待條項을 폐지함으로써 투자촉진제도로 정비하고 수출가격지지로 인하여 수출촉진 효과를 발생시키는 輸出損失準備金 등 外貨獲得支援制度도 전면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함.
- 1995년에 개정된 移轉價格稅制는 OECD의 「移轉價格課稅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과거에 비하여 특수관계를 실질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移轉價格 事前承認制度를 도입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음.

- 앞으로 移轉價格 조작이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 객관적인 獨立企業價格 算定方式을 개발하고, 調査技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移轉價格 事前承認制度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獨立企業價格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稅務情報 보호에 관한 조항 보완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 동시에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移轉價格稅制 專門家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야 함.
- 정부는 1995년 말에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過少資本稅制, 租稅避難處(Tax Haven)에 대한 대책 등 국제적 租稅回避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國際租稅 운용과 관련된 국가간 租稅協力 규정을 정비하였음.
- 이 법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租稅回避 방지 규정들이 국제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이 제도들이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에는 勞動所得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앞으로 資本의 移動이 증가함에 따라 勞動의 移動도 증가하게 되므로 거주자의 범위, 해외자회사에의 진출·과건에 대한 인건비 취급기준 등 海外勞動所得과 外國人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課稅制度도 국제적인 課稅基準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 關稅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수준, 수입비중, 수출비중, 내국세부담률이 유사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關稅負擔率(현행의 中心稅率 8%)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短期的으로는 現 水準의 關稅率을 유지하고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個別品目の 關稅率을 개편하는 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關稅減免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關稅減免制度를 WTO 補助金協定에 맞추어 산업별지원에서 기능별 지원체제로 개편하며 사후관리, 추천 등 關稅減免 運用節次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함.
- 關稅還給節次를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國際競爭力 강화를 지원함.
- 關稅 등의 환급금 계산에 사용되는 소요량 관리를 기업자율에 맡겨 운용하는 등 還給制度和 節次를 簡素化하고 電算化를 추진함.

## 2) 長期改編方向

### 가) 企業課稅

- 稅制를 單純化하고 각 부문간 투자에 대한 租稅의 中立性을 제고하여 경제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課稅標準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6%의 낮은 稅率을 적용하

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8%의 높은 稅率을 적용하는 複數稅率體系를 단순화하여 單一稅率體系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租稅抵抗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單一稅率體制로 이행해 가는 방법으로 낮은 稅率 適用對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궁극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稅率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세계적인 法人稅率 변화추이를 보면 선진국들의 法人稅率은 대체로 30% 내외로 수렴하고 開途國들을 중심으로 하는 低稅率國의 세율은 20% 내외 또는 그 이하로 양극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財政需要의 增加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長期的으로 低稅率國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기보다는 先進國의 稅率變化를 주목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法人의 住民稅 등 附加稅를 포함한 總稅負擔을 선진국의 세부담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95년 세법개정에서 二重課稅 방지를 위해 도입한 間接外國納付稅額控除制度는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상대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해외소득에 대해 外國納付稅額控除가 허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내국 법인간 配當에 대해서도 二重課稅를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내국법인의 國內投資와 海外投資에 대한 왜곡요인을 제거하여야 함.
- OECD 모델과 UN 모델을 혼용하고 있는 租稅條約을 長期

的으로 선진국형인 OECD 모델을 따르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외국인의 국내 派生金融商品 投資에 대한 합리적 課稅 基準을 마련하여야 함.

## 나) 關稅

- 長期的으로는 기업의 원가부담절감, 對外關稅協商의 实效性 提高, 關稅還給 관련비용 절감을 위하여 原資材에 대한 課稅引下·無稅化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關稅의 徵收와 還給의 과정에서 國家 및 輸出業體가 부담해야 하는 經濟的·社會的 費用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關稅 還給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總輸入 중에서 輸出用 原資材 輸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약 1조 2천억원에 가까운 關稅가 환급되었음.
- 開途國에 대한 GSP 공여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關稅 관련 國際機構에의 출연을 확대 함.

## 다. 情報化

- 根據課稅가 확립되지 못해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가 本然의 기능에서 상당히 괴리되어 현실에서 보다 투명화된 納稅環境의 조성으로 納稅者와 徵稅者間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關聯 費用을 줄이기 위해 稅務業務의 電算化가 불

가피해지고 있음.

## 1) 短期改編方向

- 納稅者의 便宜를 제고하기 위해 郵便申告制를 확대함.
- 각종 基準率, 標準率은 폐지하여 내부참고용으로만 쓰고 記帳에 의한 申告納付를 의무화함.
-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자료와 반복적인 업무 등을 電算化하여 自動賦課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納稅者의 便宜를 도모하는 한편 推計課稅方法의 개선 등에 활용함.

## 2) 長期改編方向

-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納稅申告方法에 電算申告制를 도입함.
- 세원정보자료 및 조사자료가 분산 혹은 중복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情報體系가 一元化되지 않아서 활용도가 적은 자료의 과도한 수집 처리에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음.
- 따라서 세원자료 및 조사자료를 단말기 또는 PC를 통하여 주전산기에 입력하고 인별·기업별로 D/B화하여 검색기능과 분석기능을 부여하고 稅源情報資料 및 調查資料의 綜合管理體系를 構築해야 함.
- IC카드라는 새로운 記憶媒體를 이용하여 은행 전자지갑의

제휴영역에 거래실적 근거자료를 남김으로써 附加價值稅 自進申告時의 不誠實 申告者에게는 申告義務 不履行에 대한 처벌을 하고 성실히 신고한 자에게는 응당한 稅金減免 혜택을 주어서 전체적인 稅金賦課를 기회균등하게 함으로써 租稅行政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電子記帳制度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國稅廳에서 사전 법안을 마련하여 취지를 설명한 뒤 一般銀行에서 발급하는 전자지갑의 제휴영역을 이용하여 의무화시킴으로써 별도의 카드발급 비용이 없이도 電子記帳制度의 실시가 가능하며 단말기도 電子記帳 쪽의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상품의 거래시에 거래기록을 消費者카드의 제휴영역에 쓰는 S/W 기능만 추가하여 씬으로써 별도의 비용이 없이도 電子記帳制度의 도입이 가능함.

## 라. 老齡化(所得稅)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福祉財政支出에 대한 需要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老後所得保障은 1) 公的年金인 國民年金 2) 기업차원의 退職金 3) 個人年金으로 구분되어 있어 외형상으로는 3단계 보장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늘어나는 福祉需要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 老後所得保障制度의 경우 財政問題 이외에도 老後所得保障關聯 稅制支援이 年金制度間에 상이하게 적용됨

으로 인해 稅負擔의 衡平性 문제가 존재함.

- 현행 國民年金制度 관련 세제상 근로자의 釀出金에 대한 所得控除나 稅額控除 등의 稅制支援은 허용되지 않는 반면 급부시 給與額이 전액 非課稅되고 있음.
- 退職金制度의 경우 근로자는 給付段階에서만 관련되며 退職所得은 勤勞所得과 別途로 課稅되고 있고 實效稅率도 상당히 낮은 실정임.
- 현재 個人年金 상품에 대한 納入保險料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個人年金貯蓄에 대한 所得控除 혜택을 받고 있으며 年金受給額 수급시 또한 非課稅되고 있음.

### 1) 短期改編方向

- 公務員年金, 私立學校教職員年金, 國民年金 등의 公的年金制度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전체 年金財政의 均衡을 유지하며 職業에 따른 불공평한 負擔과 待遇를 시정하고
- 또 이들 公的年金이 退職金制度, 個人年金과 함께 합리적인 老後所得保障 體系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각 제도간 연계성을 갖도록 再整備하되 年金財政의 健全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2) 長期改編方向

- 年金保險料의 釀出段階에서 所得控除를 허용하고 給付段階에서 과세하는 TDRP(Tax Deferred Retirement Plan)型 課稅方案의 도입을 검토함.
- 아울러 公的年金 財政의 安定策으로 社會保障稅의 신규도입과 既存 消費課稅의 強化를 비교, 검토해야 할 것임.

### 마. 生活環境의 改善 및 삶의 質 向上(消費稅)

- 소득수준의 향상이 소비의 高級化를 가져와 稅負擔의 逆進性이 나타나고 生活環境 파괴와 음주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特別消費稅(交通稅 포함)와 酒稅는 이에 대응하는 기능이 미약함.
- 일부 과세대상의 경우 소비가 大衆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特別消費稅가 과세되고 있어 稅負擔의 逆進性이 심화되고 있음.
- 現行 特別消費稅 과세의 实效性이 낮아 外部不經濟 縮小라는 과세목적에 미흡한 경우가 많으며,
  - 석유류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고 環境稅 및 走行稅의 성격이 미약함.
  - 자동차 特別消費稅와 取得稅, 自動車稅 등의 과세비중이 높은 반면 燃料油(燃料油, 輕油)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

당히 낮은 편임.

- 낮은 油類價格은 자동차 운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도록 하여 交通混雜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油類의 過多消費를 초래하여 有害 排氣가스의 排出도 증가하여 대도시 公害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石油類 등은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環境稅, 에너지세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에 대비하여야 함.
- 酒稅率 體系가 衡平의 原則에 부합되지 않고 있음.

### 1) 短期改編方向

- 石油類에 대한 稅率을 引上해 環境稅 및 走行稅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을 인상하여 走行稅 및 環境稅의 성격을 강화함.
- 특히 輕油는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稅率을 지속적으로 대폭 引上해야 함.
- 경유와 대체관계가 높은 燈油도 경유의 세율인상에 맞춰 稅率의 引上이 필요함.
- 기타 非課稅되고 있는 油種에 대해서도 課稅할 필요가 있음.
- 奢侈品, 자동차, 석유류, 기타 環境稅 및 走行稅 관련 課稅

對象을 特別消費稅의 주요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기타 소비의 大衆化가 뚜렷한 물품의 경우에는 財政與件 등을 감안하면서 特別消費稅 體系를 정비함.

## 2) 長期改編方向

- 特別消費稅의 과세목적을 새로이 정립하여 課稅對象의 범위와 稅率을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함.
  - 자동차, 石油類, 고가의 사치성 제품 등과 같이 外部不經濟를 초래하거나 전통적인 個別消費稅의 과세대상에 속하는 품목은 지속적으로 課稅함.
  - 과거에는 奢侈品으로 간주되었으나 소비패턴이 고도화되면서 점차 生活必需品화된 청량·기호음료, 대중화된 家電製品 등이 稅負擔의 逆進性을 심화시키는 품목임.
  - 제품의 개발·판매 등과 관련하여 자연과피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도 과세하여 特別消費稅의 環境汚染 補正的인 성격을 강화함.
- 2020년 경에는 特別消費稅의 과세대상을 奢侈品, 石油類, 自動車, 環境汚染 誘發品目 등으로 하여 環境補正的 또는 走行稅的 성격을 강화하고 稅制體系를 전반적으로 單純化함.
- 石油製品間 相對價格 격차의 정상화를 위해 유종별 稅率水準과 課稅對象을 조정함.
  - 輕油의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에 근접시킴으로써 油種間 相對價格 隔差를 완화함.

-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油種間 소비의 비정상적인 대체현상을 완화하고, 직접적으로 輕油의 소비를 축소하여 유해배기가스의 배출을 억제함.
- 벙커-C유를 포함한 重油는 여타의 油種에 비해 공해발생요인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非課稅되고 있는바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에 편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 다만 油價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면 物價上昇을 초래하여 産業競爭力의 弱化和 低所得層의 稅負擔 增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非課稅되고 있는 油種에 대한 과세편입과 세율조정은 점진적·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적으로는 個別消費稅制를 통합한 消費稅의 課稅目的은 外部不經濟의 축소, 과세의 衡平性 제고 측면이 강조되도록 하고 石油類는 국가기반시설(infrastructure) 投資財源 確保, 環境稅, 走行稅의 성격이 강조되도록 과세를 강화함.
- 酒稅率 體系를 고급도와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재정비함.
- 酒稅率 體系를 정비함에 있어 酒種間 酒稅負擔의 衡平性을 제고하고 酒類消費에 따른 外部不經濟를 축소하기 위해 고급도와 알콜도수에 따라 酒稅率을 차등적으로 적용함.
- 酒類 관련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稅負擔 수준의 조정은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득수준이 증대되면 酒稅 部分의 세수확보 기능이 축소될 것이므로 酒稅의 과세목적은 세수확보 측면보다는 음주에 따른 폐해, 즉 外部不經濟 縮小 측면에 더욱 특화하여야 함.
- 이에 따라 酒稅率 體系를 酒類의 고급도와 알콜도수에 따라 정비하면서 보다 長期的으로는 稅率體系 정비기준을 고급도보다는 알콜도수 등 음주의 폐해 정도에 따라 差等 課稅하도록 하는 것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外部不經濟 축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附錄：稅目別 改善方案

# 1. 所得稅制의 發展方向

## 가. 所得稅制의 現況 및 問題點

### 1) 微弱한 所得稅 機能

- 우리나라 소득세 기능이 미약한 것은 완전한 包括的 所得稅制度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稅務行政의 非效率과 納稅意識의 不足으로 稅源捕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2) 勤勞所得者와 事業所得者간의 稅負擔 衡平性 問題

- 事業所得에 비해 勤勞所得의 세부담이 과중한데 이는 勤勞所得者의 세부담이 절대적으로 높다가보다는 事業所得者의 稅負擔이 稅源捕捉의 미진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데 그 근본원인이 있음.

### 3) 老後所得保障制度에 대한 租稅支援의 衡平性 問題

- 현행 우리나라의 老後所得保障關聯 稅制支援이 年金制度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됨으로 인해 稅負擔 衡平性的 問題가 존재하게 됨.

## 나. 短期改編方向

### 1) 所得間 稅負擔 衡平性 提高

- 所得稅 기능을 강화하고 所得間 稅負擔 衡平性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事業所得 등과 같은 課標陽性化가 미진한 소득에 대한 적극과세로 임해야 할 것임.
  - 課標陽性化를 위해서는 根據課稅의 確立이 絶실히 요청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誠實記帳을 적극 유도하고 稅金計算書 등의 과세자료의 발생을 원활히 하는 制度的·行政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동안 推計課稅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標準所得率은 비공개하고 표준소득률 이외의 다양한 所得推計方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事業所得의 課標陽性化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그 동안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과중하였던 勤勞所得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定着

- 金融所得綜合課稅의 정착을 위해서는 經濟에 미치는 否定的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納稅者에게 주는 불편을 줄이면서 實效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補完對策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課稅當局이 적극적으로 申告案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簡便申告書式의 개발에 주력해야 함.
-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金融所得綜合課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實物保有債券에 대해서 差等 源泉徵收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老後所得保障制度 關聯 稅制整備

- 公的年金制度間 連繫方案을 마련하고 公的年金制度和 個人年金制度間 일관성있는 課稅方法의 개발이 검토되어야 함.

## 다. 長期改編方向

### 1) 綜合所得稅 課稅單位의 再檢討

- 현재 金融所得 및 不動產 賃貸所得에 대해서만 夫婦合算으로 課稅하고 있으나 향후 金融所得綜合課稅가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所得稅 전반에 있어서 夫婦合算과 夫婦別算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 2) 事業所得課稅의 先進化

- 長期的으로 徵稅費코스트를 낮추고 課稅의 衡平性を 높이

기 위해 電子記帳의 導入을 추진하고,

- 電子記帳制度가 정착되면 消費行爲에 대한 대금 지불단계에서 事業所得 관련세액을 源泉徵收하고 綜合課稅시 정산하는 방법의 도입을 검토함.

### 3) 實質的 綜合課稅로의 轉換

- 長期的으로는 金融所得綜合課稅의 기준금액을 없애고 전면적인 綜合課稅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金融所得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따라서 有價證券 讓渡差益課稅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는 所得源泉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稅率體系로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所得稅制를 거의 모든 所得을 열거하는 實質的 의미에서의 包括主義로 변경.

### 4) 年金所得의 課稅

- 老後所得保障制度 釀出段階의 所得控除를 통한 稅制支援과 給付段階의 課稅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점진적으로 年金所得에 대해 課稅함으로써 향후 2000년대에 심각히 대두될 財政收支 赤字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향후 國民年金 釀出料 인상시 釀出料에 대한 所得控除를 허용함으로써 釀出料 인상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음.

## 2. 世界化時代に 副應하는 企業課稅制度의 確立

### 가. 企業環境의 變化와 國際租稅制度

- 1980년대 이후 世界經濟 環境의 變化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企業活動의 世界化를 들 수 있음.
- 과거에는 財貨 및 用役이 중심이 되었던 國際 經濟交流에서 資本 등 生産要素의 重要性이 증대되고 있으며,
- 따라서 資本所得에 대한 課稅의 國際的 調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資本所得에 대한 課稅의 國際的 調和를 위해서는
  - 과세의 국가간 衡平性, 資源이동에 대한 조세의 中立性, 납세자간의 公平性을 달성하는 租稅體系의 合理化 및 國際的 調和를 이룩하고,
  - 국제적 二重課稅 및 租稅回避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 短期改編方向

- 租稅支援制度의 單純化 및 租稅의 中立性 제고를 위해서,
  - WTO에서 禁止補助金으로 규정하고 있는 支援制度를 폐지하고 國산우대조항이 있는 각종 投資稅額控除制度는 국

산우대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항구적인 투자촉진제도로 정비하며,

- 日沒法을 도입하여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하여야 함.
- 1995년에 도입·정비된 移轉價格稅制, 過少資本稅制, 租稅避難處(Tax Haven)對策稅制 등 租稅回避 防止制度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특히 移轉價格稅制의 경우 移轉價格 事前承認制度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獨立企業價格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稅務情報 보호에 관한 조항 보완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移轉價格稅制 專門家を 양성하여야 함.
- 그 이외에 國際 勞動所得에 대한 課稅制度를 整備하여 국제적인 과세기준을 확립하여야 함.

#### 다. 長期改編方向

- 租稅體系의 合理化 및 國際的 調和를 위해서
  - 法人稅 낮은 稅率 課稅對象 범위를 縮小하여 대부분의 기업에 높은 稅率을 적용하여 法人稅體系를 單純化하고,
  - 높은 稅率은 선진국 수준보다 다소 낮은 상태로 유지하여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中立性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내 租稅收入을 極大化하여야 함.

- 租稅支出豫算制度를 도입하여 조세지원 전반을 국민이 통제·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 産業別 支援方式은 止揚하고 꼭 필요한 경우의 지원은 機能別 支援方式에 의해 지원하여야 함.
- 1995년 세법개정에서 二重課稅 방지를 위해 도입한 間接外國納付稅額控除制度는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상대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해외소득에 대해 外國納付稅額控除가 허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내국 법인간 配當에 대해서도 二重課稅를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내국법인의 國內投資와 海外投資에 대한 왜곡요인을 제거하여야 함.
- OECD 모델과 UN 모델을 혼용하고 있는 租稅條約을 長期的으로 선진국형인 OECD 모델을 따르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외국인의 국내 派生金融商品 投資에 대한 합리적 課稅基準을 마련하여야 함.

### 3. 個別消費稅制의 合理化

#### 가. 現況 및 問題點

- 特別消費稅와 酒稅는 성격상 동일하면서도 분리되어 있어 소비세 체계의 일관성이 미약한 편임.
- 현행 특별소비세는 課稅對象이 지나치게 넓고,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 外部不經濟 縮小 등의 과세목적에 미흡함.
  - 消費의 大衆化에 따라 稅負擔의 逆進性이 심화되고 있음.
  - 環境稅, 에너지稅와 관련하여 그린라운드에 대비하면서 外部不經濟 縮小를 위해 特消稅 課稅의 強化가 필요함.
  - 油種間 稅率隔差가 지나치게 크고 石油類 課稅對象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石油類 課稅가 적정 수준에 미달함.
- 酒種間 주세율 체계가 衡平을 잃고 있고 국민보건위생 측면에서 볼 때 消費抑制的 租稅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고 酒種間 稅率 隔差 問題도 심각함.
  - 위스키의 세율(100%)이 맥주의 세율(130%)보다 크게 낮아 課稅의 衡平性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나. 短期改編方向

- 사치품, 자동차, 석유류, 환경세·주행세 관련 물품을 特別消費稅의 主要 課稅對象으로 하면서, 기타의 경우 財政與件과 消費패턴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함.
- 전반적으로 石油類 製品에 대한 稅負擔을 대폭 인상하고 非課稅 油種도 課稅할 필요가 있음.
  - 輕油는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稅率을 대폭 인상함.
  - 이를 통해 특별소비세(교통세)의 기능을 환경세 및 주행세 위주로 개편함.
- 特別消費稅 개편에 따른 期待效果
  - 稅負擔 輕減과 物價引下 效果, 환경개선 및 교통원활화가 예상되며, 稅收減少가 다소 우려되지만 石油類 課稅強化를 통해 이를 보전할 수 있음.
  - 石油類 課稅 강화의 경우 물가상승 요인이 다소 있음.

## 다. 長期改編方向

- 交通稅는 본래의 特別消費稅로 통합하고 각 個別消費稅는 消費稅라는 명칭아래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함.
- 特別消費稅의 과세대상을 奢侈品, 石油類, 自動車, 環境汚染 誘發品目 등으로 하여 環境補正的·走行稅的 성격을 강화하

고 稅制體系를 單純化함.

- 生活必需品化된 特別消費稅의 課稅대상은 非課稅하고 새로이 課稅목적을 正立하여 課稅對象의 範圍를 調整함.
- 자연파괴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도 環境汚染 補正的 측면에서 特別소비세 課稅를 強化함.
- 中國적으로 消費稅의 課稅目的은 外部不經濟의 축소, 課稅의 衡平性 提高 측면이 強調되도록 하고 石油類는 國家基盤施設(infrastructure) 投資財源 確保, 環境稅, 走行稅의 성격이 強調되도록 課稅를 強化함.
- 酒稅의 稅收確保 功能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므로 酒稅의 課稅목적을 外部不經濟 縮小 측면에 더욱 特化하고, 酒種間 酒稅負擔의 衡平性 提高와 外部不經濟 縮소를 위해 高 酒稅率 體系를 정비함.
- 中國적으로는 酒稅率 體系를 高酒稅率보다 低酒稅率 體系에 따라 差等課稅하는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둠.
- 전반적인 酒稅負擔 수준을 引上함.

## 4. 關稅制度的 先進化

### 가. 背景

- 國際交易秩序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國際化와 開放化를 요구하고 있으며, 國際化와 開放化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의 철폐를 수반함.
- 따라서 國內産業의 保護와 育成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입장만을 고려한 독자적인 關稅政策을 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음.
- 이러한 制約條件下에서 우리나라의 關稅制度를 先進化하기 위해서는 關稅體系의 합리적 개선, 關稅支援制度의 개선, 産業被害救濟制度 운용의 활성화, 國際關稅協力の 강화, 輸入通關制度의 선진화 등과 같은 분야가 核心課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나. 短期改編方向

#### 1) 關稅率 水準의 短期的 改編

- 短期的으로는 現 水準의 關稅率을 유지하되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個別品目の 關稅率을 개편하는 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 關稅減免制度의 改善

- 關稅減免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關稅減免制度를 WTO 補助金協定에 맞추어 産業別支援에서 機能別 支援體制로 개편해야 할 것임.

## 3) 關稅還給制度의 改善

- 關稅還給節次를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國際競爭力 강화를 지원함.
  - 關稅 등의 환급금 계산에 사용되는 소요량 관리를 기업자율에 맡겨 운용하는 등 還給制度和 節次를 簡素化하고 電算化를 추진함.

## 4) 産業被害救濟制度의 活性化

- WTO 체제에서 공인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농산물특별긴급관세 운용을 활성화함.

## 5) 輸出入通關制度의 先進化

- 輸出入通關制度를 先進化하기 위해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하고, 虞犯貨物選別管理體系(Cargo Selectivity System)와 旅行者 通關情報處理시스템을 발전시키며 世界關稅機構(WCO)에서 통관제도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제정한 國際關稅規範(Kyoto Convention)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함.

## 다. 長期改編方向

### 1) 關稅率 水準의 中長期的 改編

- 모든 産業에 걸쳐 關稅引下를 해나가되, 産業의 競爭力을 철저히 규명하여 産業에 따라 關稅引下의 속도를 달리함으로써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2) 原資材와 中間財의 無稅化

- 短期的으로는 原材料와 中間財에 대해 關稅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長期的으로는 세수추이를 감안하여 기업의 원가부담절감, 對外關稅協商의 실효성 제고, 還給關聯費用 절감 등을 위해 原資材에 대해 단계적으로 關稅引下·無稅化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3) 國際關稅協力の 強化

- 우리나라의 관세인하추이를 보아가며 主要 競爭國들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關稅率수준을 낮추도록 WTO, APEC 등 다자간 협상 또는 쌍무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開途國에 대한 GSP 공여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關稅 관련 國際機構에의 출연을 확대함.

## 5. 相續稅制의 合理化

### 가. 背景

- 배우자의 상속·증여분에 대한 非課稅 요구가 점증하는 등 社會環境의 變化로 인해 향후 相續課稅의 기본흐름이 현재의 수직적(父子間 이동) 및 수평적 이동(夫婦間 이동)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는 혼합체계에서 수직적 이동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계로 變化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富의 集中 緩和를 위해서는 富가 차세대로 이전될 때 正當한 세금을 물도록 하고, 아울러 축적된 富가 社會的 厚生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나. 短期改編方向

#### 1) 課稅標準 區間的 擴大

- 현행 相續稅와 贈與稅의 과세최고계급(相續稅: 5억 5천만원, 贈與稅: 3억원)을 대폭 上향조정 함.

#### 2) 控除制度의 整備

- 控除의 종류를 縮小하고, 特定자산(不動產)을 중심으로 되

어 있는 控除制度를 정비함으로써 稅負擔의 水平的 公平과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現행의 配偶者 控除方式을 유지하면서 금액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임.

### 3) 世代省略移轉 課稅制度의 改善

- 世代省略移轉 課稅制度는 1세대 1회 과세원칙에서 본다면 現행의 稅率 20%의 加算규정은 너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最高한계세율을 고려하여 別도의 稅率로 과세해야 함.

### 4) 支配株主의 所有株式에 대한 割増評價의 改善

- 非上場株式 중 支配株式에 대한 10% 할증평가규정은 上場株式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할 것임.
- 株式과 함께 經營權도 넘어가는 경우에는 上場·非上場の 구분없이 經營권을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株式만 넘어가는 경우보다 무겁게 과세함.

### 5) 公益法人에 대한 事後管理 強化

- 公益法人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면세조건에 일치했으나 사후 면세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公益法人의 公益性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自己去來에 대한 規制를 강화하는 등 事後管理를 보다 철저히 함.

## 다. 長期改編方向

### 1) 相續稅率體系의 改善

- 相續稅 課稅標準 區間의 擴大와 함께 장기적으로 最高階級 區間의 稅率을 조정하여 中산층은 현재와 같은 수준 혹은 그 이하의 相續稅를 부담하게 하고, 富유층에 대해서는 相續稅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노령화사회를 맞이하여 相續稅率과 贈與稅率을 單一稅率體系로 전환함으로써 生前移轉과 死亡遺産에 대한 稅負擔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해 바람직할 것임.

### 2) 取得課稅型으로의 轉換

- 富의 分散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相續稅 課稅方法을 현재의 遺産課稅型에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상속관행, 상속 등기제도 및 명의신탁제도 등이 개선되어서 遺産의 偽裝分割相續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稅務行政이 완전히 電算化되어서 相續稅 相關 行政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 6. 財産稅制의 發展方向

### 가. 財産稅制의 現況 및 問題點

- 부동산 유형별로 내무부 時價標準額(건물), 건교부 公示地價(토지), 국세청 基準時價(공동주택)로 정리된 재산과세 평가기준이 평가시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市價와 대비하여 여전히 낮은 課標(현실화)率 수준에 있음.
- 재산과세의 GDP 대비 비율을 國際的으로 비교하면 선진국 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구성측면에서 취득단계과세 비중이 보유단계 과세비중보다 과도함.
-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需要 증대와 土地保有稅 負擔 증가를 통한 지가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은 현행 토지보유세인 종합토지세제 구조하에서 동시에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과세주체별(국세·지방세), 기능별(재원확보·정책목표달성)로 구분되어 多岐的·斷片的으로 운영, 개편되고 있는 재산과세를 재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主機能을 재정립하여 이에 따라 세목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핵심과제라고 판단됨.

## 나. 短期改編方向

- 지속적인 토지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현행의 종토세를 地方土地稅와 (新)綜合土地稅로 2분화한 후, 토지과다보유 억제와 세원편중문제 완화라는 중앙정부 정책목적 달성은 新綜合土稅에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세입기반 향상은 地方土地稅에서 각기 추구하도록 함.
-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로 증가된 지방정부 재정수요를 신세원의 발굴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만으로 충당하는 것보다는, 응익원칙에 따라 比例課稅할 수 있는 (토지분)재산세를 시·군·구세로 신규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財政責任性(fiscal accountability)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가안정 및 토지과다보유 억제라는 중앙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人別控除範圍를 갖는 종합토지세로 개편하여 免稅點(과세최저한) 이상의 토지과다보유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累進課稅體系로 전환함.
- 자본소득(capital income)적 개념이 약하고 불로소득적 요소가 강한 토지에 대한 資本利得(capital gains)은 개발이익환수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에서 엄격하게 흡수함.
- 지방세 성격의 (토지분)재산세는 토지·건물분리평가 및 분리과세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건물분)재산세와 統合課稅하며, 세율구조는 누진세율에서 比例稅率로 전환함.

## 다. 長期改編方向

- 公示地價制度는 토지보유세 과표형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거래단계의 과세는 實去來價額의 適用範圍를 擴大하여 課標評價의 精確性을 提高함.
- 基準時價를 이용하여 자본이득을 추계한 후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課標率의 취득·매각 시점간 균일성이 공시지가제도 내부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의 기준시가 적용원칙에서 實去來價額 適用原則으로 전환함.
- 높은 세율(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 총 5.6~5.8%)로 세부담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등록·취득세는 거래의 동결효과나 전가를 통한 지가상승 효과를 유발하며 세수의 경기변동성을 가지므로, 보유과세의 증가규모에 상응하여 등록세는 취득세와의 統合과 稅率의 引下(또는 수수료화)를 지방재정조정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함.
- 自家居住用 代替取得住宅에 대한 讓渡稅制 改善
  - 主거주주택의 대체취득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현재 운영중인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非課稅制度를 조세혜택 부여의 본연의 목적과 정부의 주택공급기본정책에 부합하도록 所得控除制度로 전환함.
- 不動產 讓渡益의 他源泉所得과 綜合課稅
  -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資產市場의 均衡發展 정도에 맞추

어, 자산유형별로 분류되어 비과세 또는 차등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감면폭을 줄이고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종합소득체계내로 흡수함.

- 所得再分配效果를 감안한 包括的 財産保有稅의 導入檢討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정여건의 개선으로 과거의 과세대상 물건위주의 재산과세방식에서 납세의무자별(인별·가구별) 재산과세방식인 재산보유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土地超過利得稅는 토지이용에 대한 과도한 왜곡과 과도한徵稅費用의 문제가 있으나 地價急騰에 대비한 豫備的 장치로서의 기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의 도입과 더불어 長期的으로 폐지를 신중히 검토함.

## 7. 地方化時代의 바람직한 地方稅構造

### 가. 現況 및 問題點

- 現행 地方稅制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財産課稅 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하여 稅收의 所得·消費彈力性이 미흡하다는 점으로, 향후 21세기의 地方自治의 확대, 국가사무의 地方移讓에 따른 需要의 增加, 自治團體의 役割과 機能의 變化 등을 감안할 때 地方稅에 있어서 所得·消費課稅의 확충이 필요함.
- 地方自治의 실시가 NIMBY(Not In My Back Yard) 및 PIMFY(Please In My Front Yard)로 대변되는 地域利己主義의 만연에 의해 국가전체의 效率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制度的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現재 國稅와 地方稅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稅制發展審議會와 地方稅審議會를 통합하여 이를 租稅發展審議會로 확대 개편하고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나. 短期改編方案

- 우선 地方稅制의 基本 原理에 부합되도록 稅制의 明瞭性(certainty), 納稅便宜(convenience)와 徵稅簡便性(economy) 측면과 지방세제의 저변확충을 통한 稅制運營의 安定성과 稅源의 普遍性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現행 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現행 지방세제의 複雜성과 課標의 重複問題를 해결하여야 하며, 세제의 中立性を 제고하기 위해 대도시 중과, 비업무용 중과 등 각종 重課稅制度和 非課稅·減免制度를 縮小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現행 地方稅制는 획일적인 세제를 모든 地方自治團體에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각 자치단체의 다양한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財政的인 特殊性을 감안한 세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획일적인 세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개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財政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彈力稅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地域開發稅는 법정의 普通稅制度의 도입시 까지 지역의 특성에 적절한 稅源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普通稅로 전환시킴.
- 지난번의 인천시와 부천시 등의 세금비리사건을 계기로 地方稅 徵收行政의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

- 기본적으로 地方稅行政의 效率化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稅務公務員의 專門化, 稅務行政의 電算化와 더불어 稅制의 單純化가 관건임.

#### 다. 長期改編方向

- 地方財政의 擴充을 도모하는 방식에는 地方稅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地方財政調整制度의 확충을 통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 地方稅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법은 美國 및 日本과 유사한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 현실에 있어 富益富 貧益貧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 地方稅의 확충과 地方財政調整制度의 적정한 균형을 모색하는 유럽제국의 형태가 우리에게 더 바람직할 수 있음.
- 財政需要의 增大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長期的으로 中央政府의 많은 機能이 地方으로 移讓되는 한편, 많은 地方政府의 기능은 民營化(privatizaion)될 전망이다.
- 첫째, 目的稅收入의 빈번한 轉用과 收入支出間의 連繫性不足으로 目的稅의 제도적인 취지가 모호한 반면 이로 인해 稅制가 복잡해지고,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目的稅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함.
- 둘째, 財產稅를 중심으로 한 세원분리주의분은 지방세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所得稅와 交通稅는 세원공유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교부금·양여금등 현행 地方財政調整制度와 연계하여 검토함.

- 地方財政의 擴充과 지역간의 衡平性 提高를 위해서 地方交付稅率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며 배분산식을 單純化하고 諸地方財政調整制度間的의 연계성을 강화함.
- 각 자치단체 고유의 稅源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 외세목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課稅自主權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자동차세의 適正化 및 走行稅·環境稅的인 특성을 감안하여 交通稅의 일부분을 共有하여 도로파손,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등 外部不經濟를 內在化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장기적 地方稅構造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앙-시·도-시·군·구의 政府機能이 지역주민의 복지증대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再調整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적합한 地方稅와 地方財政調整制度의 개선에 초점이 모아져야 함.
- 넷째, 教育財政과 地方財政構造의 一元化를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함.
- 다섯째, 지역경제가 지방정부의 財政力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군지역의 경우 産業的인 측면이나 人口構造的인 측면에서 독립된 살림단위가 되기 어려움.
-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市·郡統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自主的인 의사결정단위로서 行政區域을 改編함.

- 현행 道稅의 시·군·구 代理徵收形式에서 탈피하여 광역정부단위에 地方稅務局을 설치하고 지역별로 단위세무서를 설치하여 地方稅行政을 專門化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8. 根據課稅制度的 確立

### 가. 短期改編方向

- 根據課稅와 課標陽性화를 위해 小規模 事業者에 대해 稅金 計算書의 授受誘引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하며 稅金計算書 授受秩序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적·행정적 유인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稅金計算書, 計算書, 簡易稅金計算書, 領收證을 단일화·기계 화하여 자동전산입출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領收證 등에 稅前價格과 附加價値稅를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함.
- 標準申告率 제도와 標準所得率 제도는 일부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免罪符의 역할을 하여 課標 은폐·축소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므로 폐지함.
- 稅務署組織을 稅目別 組織에서 納稅者 中心의 機能別 組織으로 개편
- 根據課稅制度的 確立을 위해서는 記帳에 의한 稅務申告를 의무화해야 함.
- 稅務行政의 기본업무라 할 수 있는 納稅者 管理, 申告, 納付 및 還給, 調査, 徵收, 滯納整理 등은 週期的으로 反復되는 業務이므로 가능한 한 電算化를 통해 업무부담을 줄여야 함.

- 엄정한 세정집행을 위해서는 稅務調査의 效率性を 높여야 함. 無作為標本抽出(random sampling)을 통한 稅務調査를 실시하여 모든 納稅者가 稅務調査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誠實申告와 自進納稅를 진작시켜야 함. 納稅順應度測定(taxpayer's compliance measurement plan)을 통한 납세순응도 판별함수(discriminant function system)의 구축으로 租稅回避 危險要素(risk factor)의 수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함.

## 나. 長期改編方向

- 課標陽性化를 위해서는 附加價値稅 稅金計算書 授受秩序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課稅體系를 單純化하고 根據課稅制度를 확립하여야 함. 特例課稅(簡易課稅制度 포함)를 폐지하고 모두 一般課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규모가 매우 적은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少額不徵收 제도를 유지하여 少額不徵收와 一般課稅의 두 가지 체계로 개편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세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稅務公務員의 專門化가 필요함.
- 稅政執行에 있어서 업종별 特殊性을 감안한 MSSP (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를 도입하여 세무공무원의 專門性を 제고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稅務署 組織의 機能別 改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所得稅業務와 附加價値稅 業務의 重複課稅防止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두 조직은 통합되어야 할 것임.
- 세계시장의 開放化 추세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국내기업의 외국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國際去來 稅源을 전담할 國際租稅 담당 專門稅務公務員의 育成이 시급함.
- IC카드라는 새로운 기억매체를 이용하여 電子記帳制度를 실시하여 거래실적 근거자료를 남김으로써 附加價値稅 자진신고시 전체적인 세금부과를 기회균등하게 함으로써 租稅行政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음.

## 9. 納稅者 權益保護

### 가. 短期改編方向

- 종래의 租稅行政에 관한 절차법 내지 절차규정은 納稅者의 權益의 옹호보다는 주로 納稅者의 義務를 강조 또는 확인하는 입장을 벗어나지 못함.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納稅者權利憲章의 제정이 시급함.

### 나. 長期改編方向

- 稅務署에 직접 와서 신고하는 체제에서 郵便申告制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이와 병행하여 세무대리인(稅務士와 公認會計士)을 통하는 경우 電算申告方案 강구함.
- 각 세목별 申告回數 및 週期를 재검토하여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業務偏重현상을 방지하고 업무부담을 平準化시킴 (특히 附加價値稅와 所得稅).
- 納稅者의 자발적인 納稅順應度を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納稅者에 대한 적극적 안내와 함께 미래의 納稅者에 대한 교육이 매우 효과적인 방안임.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다양하고 간편한 案内冊子の 배포를 통해 納稅者들과의 거리감을 줄여나가야 하며 日本·美國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租稅

教育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納稅者權利救濟制度(지방세포함)의 확충을 위해서는 음부  
즈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와 같이 納稅者의  
자발적인 納稅協力이 부족한 상황 및 徵稅實績에 의한 공  
무원의 평가등 기존의 租稅慣行 및 제도등의 개선을 포함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